

사단법인 오늘은 회원총회 의사록 (2020-1차)

1. 개최일시 2020년 2월 11일 19시
2. 개최장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3번지 7층
3. 총 회원 수 97명
4. 출석회원 수 66명

의장인 이사 박재항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66명/97명(68%)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사전에 통지한 의안이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의장은 1)법인의 목적사업의 구체화 2)회원 종류 및 자격 구분의 변경 3)총회 및 이사회, 결산 시기의 변경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찬·반여부를 물으니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에 대해 승인을 가결하다.

1) 법인의 목적 및 사업 변경 (사업내용 구체화)

현행	개정안
제 1장 총 칙 제 3 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청년대상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에 앞장서고, 문화 예술 전반에 반영될 창의적인 청년 문화 활동 접목에 노력하며, 문화예술 인재 육성과 기회 등을 지원하여,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총 칙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청년이 사회가 설정한 획일화된 행복과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청년이 각자의 고민과 가치가 담긴 삶의 기준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인재 육성과 기회 지원 등을 포함한 각자의 행복에 맞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문화예술 개인출판을 위한 청년대상 공모전 지원 2. 문화콘텐츠 분야 창작 클래스 개발 및 제작 환경 제공 지원 3. 인문학, 예술, 영화 등 문화전반에 대한 강의 및 토론회 개최·진행 4. 청년맞춤형 여가 활동 및 전시 작품소개의 홍보 지원 5. 문화예술 관련 상생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 교류 협력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청년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 지원 2. 청년들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및 문화 경험 지원 프로그램 3. 사회 소외 청년(다문화, 장애인, 보호종료청년 등)에 대한 연구 사업 4. 사회 소외 청년의 문화 예술 재능 발굴 및 지원 5. 장애 청년의 진로 직무 교육 및 문화 경험 지원 6. 청년봉사단 활동 지원 7. 사회소외청년을 위한 일자리 및 문화서비스 지원 8.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청년 관련 사업.
없음	제4조(사업) ②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법인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변경 (회원 종류 구체화 및 규정 통합)

현행	개정안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 및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대의원)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10인 이내 선정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일반회원: 법인의 사업 목적을 이해하여 일정액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특별회원: 우리단체의 설립 및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6조(회원)에 관한 규정) ① 회원의 입회절차, 회비, 회원의 자격특실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서 별도로 정한다. 단,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④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삭제 (제 6조 회원에 관한 규정에 포함)
제 9 조(회원의 상벌) ①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삭제 (제 6조 회원에 관한 규정에 포함)

3. 총회 구성의 변경

현행	개정안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임원 및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4. 결산 시기의 변경 (회계결산 일정 변경)

현행	개정안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주소 변경 (부칙) : 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사무소 변경

현행	개정안
부칙 제 2 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도화동 553) 1101호”로 한다.	부칙 제 2 조(설립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소재로 한다.

제2호 의안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 사무국에서 감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고, 의장이 이견사항이 있는가를 묻고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 함

제3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무국에서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고, 의장이 이견사항이 있는가를 묻고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2020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승인 함
- 기타의견: 이사 정은우는 사업계획 중 ‘사회적 소외 20대 연구’ 건에 관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발언하다.

제4호 이익잉여금 처분의 관한 건

- 의장은 법인의 2019년 이익잉여금 중 일부(이자수익)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을 요청하고, 이견사항이 없어 전입을 승인함.

2020년 2월 11일

사단법인 오늘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번지

의장이사 박재항 (인)

이사 김태원 (인)

이사 정은우 (인)